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 가축방역사 농장 점검 추진

1.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 가축방역사의 농장 점검 등과 관련됩니다.

2.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발생 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병원성 AI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금 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이에 방역본부는 소속 가축방역사의 예찰 등 평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금 농장 출입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점검 및 지자체 통보 결과를 우리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확인점검 대상 : 전국의 가금 농장(사육시설 50제곱미터 이상)

2 확인점검 사항(점검양식 붙임 1~5)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소독실시 여부, 쥐·곤충 제거 의무, 소독실시기록부의 구비 및 기록 여부
※ 모든 농가에 대한 전실점검 철저(동별 발판소독조, 손소독기, 방역복 및 장화 구비 확인 등)
② 기 발령된 행정명령(15건) 및 공고(3건)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붙임 6)

3 위반사항 확인시 조치 방법 및 절차
○ 농장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서 고발,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요청
○ 위반사항과 행정처분한 결과를 농식품부(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AI상황실)로 보고

4 (보고방법) 방역본부는 붙임 양식 10에 따라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fmdai@korea.kr)로 일일 보고

붙임 1. 가금농장 점검표.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국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서기관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이기중** 전결 2021.1.21.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649 (2021. 1. 2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5 팩스번호 044-863-9210 / whangsc@korea.kr / 대국민 공개